

TCK

SEOUL | LONDON

수수료부과기준

토포앤코코리아자산운용 주식회사

Topor & Co. Korea

수수료부과기준
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에 의거하여 토포앤코 코리아자산운용(이하 "회사"라 한다)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수수료부과 원칙)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여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
제3조(수수료의 종류) 이 기준이 적용되는 수수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수수료가 아닌 집합투자기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징수하는 수수료(또는 보수)는 제외된다.

1. 집합투자증권 판매수수료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
2. 집합투자기구 환매수수료: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기간 이전에 집합투자기구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범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로서 집합투자기구 운용의 안정성과 집합투자기구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집합투자기구 재산에 편입됨
3. 투자자문수수료(또는 보수):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대가로서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투자자문계약서에 따라 지급됨
4. 투자일임수수료(또는 보수):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대가로서 투자자가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투자일임계약서에 따라 지급됨

제4조(수수료의 한도) ① 회사가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연별 수수료의 한도(제3조 제2호 제외)는 투자금액(또는 계약금액)의 5%로 한다. 다만, 제3조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하여 운용성과에 연동되어 지급되는 수수료는 이 한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공되는 서비스나 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5%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적정성 여부를 상품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.

제5조(수수료의 부과기준) 회사는 제4조에서 정한 한도 이내에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부과한다.

1. 집합투자증권 판매수수료는 회사가 판매 또는 중개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부과한다.
2. 집합투자기구 환매수수료는 판매 또는 중개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부과하고 관련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처리한다.
3. 투자자문수수료는 투자자와의 합의에 따라 투자자문계약에서 정한 수수료(또는 보수)를 부과한다.
4. 투자일임수수료는 투자자와의 합의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수수료(또는 보수)를 부과한다.

제6조(부과절차) 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한다.

1. 집합투자증권 판매수수료: 회사가 판매 또는 중개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한다.
2. 집합투자기구 환매수수료: 회사가 판매 또는 중개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한다.
3. 투자자문수수료(또는 보수): 투자자문계약의 체결 권유 시 투자자에게 자문수수료를 제시하고 투자자문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된 수수료를 부과한다.
4. 투자일임수수료(또는 보수): 투자일임계약의 체결 권유 시 투자자에게 자문수수료를 제시하고 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된 수수료를 부과한다.

제7조(기타) 회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, 금융투자협회에도 통지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1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.